

2023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01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3년 5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운용 계획에 반영하고, 공사 용자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신설을 위해,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및 예탁금 변경 내역 반영

나.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반영

다. 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기관 금융지원’ 정책사업 신설

라. 시금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및 이자상환 증감액 반영

마. 운용규모 : 1,400,734백만원(당초 계획 대비 358,204백만원 감소)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758,938	1,400,734	△358,204	△20.4
용자금원리금회수	16,858	6,067	△10,791	△64.0
예수금	1,374,150	1,128,694	△245,456	△17.9
예탁금원금회수	13,920	13,920	-	-
이자수입	36,428	41,010	4,582	12.6
예치금회수	317,582	211,043	△106,539	△33.5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B)	증 감 (C=B-A)	증 감 율 (D=C/A)
합 계	1,758,938	1,400,734	△358,204	△20.4
투자기관금융지원	-	150,000	150,000	-
공사용자지원	-	150,000	150,000	-
공사직접용자	-	150,000	150,000	-
용자금	-	150,000	150,000	-
재무활동	1,758,931	1,250,727	△508,204	△28.9
내부거래지출	1,401,820	1,069,007	△332,813	△23.7
기금특별회계용자지원	1,401,820	1,069,007	△332,813	△23.7
예탁금	1,268,100	943,340	△324,760	△25.6
예수금원리금상환	133,720	125,667	△8,053	△6.0
보전지출	357,111	181,720	△175,391	△49.1
여유자금예치	357,111	181,720	△175,391	△49.1
예치금	357,111	181,720	△175,391	△49.1
행정운영경비	7	7	-	-
기금관리비	7	7	-	-
기금관리비	7	7	-	-
일반운영비	7	7	-	-

○ 수입계획 변경

- 용자금 원금회수 8,700백만원 감소 (8,700백만원→0)

- ▶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사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상환기한 도래 용자금 용자기간 연장

-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 2,091백만원 감소 (8,158백만원→6,067백만원)

- ▶ 시금고 금리 변동 내역 등 반영 (2022년 12월 4.90% → 2023년 5월 4.07%)

- 예수금 245,456백만원 감소 (1,374,150백만원→1,128,694백만원)

-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수금 수입 조정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97,700→179,044(△18,656)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5,600→50,000(증44,400)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441,600→420,000(△21,600)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265,500→214,100(△51,400)
- 도시개발특별회계 : 256,100→50,700(△205,40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6,400→33,700(7,3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1,250→1,150(△100)

- 이자수입 4,582백만원 증가 (36,428백만원→41,010백만원)

- ▶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규모 변동 반영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 예치금 회수 106,539백만원 감소 (317,582백만원→211,043백만원)

- ▶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감소

○ 지출계획 변경

- 용자금 150,000백만원 증가 (0→150,000백만원)

- ▶ 교통요금 인상시기 조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을 위해 용자금 증가

- 예탁금 324,760백만원 감소 (1,268,100백만원→943,340백만원)

-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부거래 조정에 따른 예탁금 수입 조정

- 일반회계 : 439,700→420,200(△19,500)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 204,200→227,540(증23,340)
-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 624,200→295,600(△328,600)

- 예수금 이자상환 8,053백만원 감소(51,671백만원→43,618백만원)

- ▶ 시금고 금리 변동 내역 등 반영

- 예치금 회수 175,391백만원 감소 (357,111백만원→181,720백만원)

-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소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변경안의 개요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내부거래 조정과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용자기간 연장, 서울교통공사 재정 지원, 시금고 금리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됨.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²⁾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정용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특별회계로 진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³⁾.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종전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승계·통합됨.

<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 >

구분	조성재원	기금용도
통합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예탁금 원금·이자수입 등 -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탁 - 공기업으로의 융자 -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재정안정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계·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보조·융자금 -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함.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면서 재정용자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조 2,937억 9백만원 증가한 4조 7,727억 2천 4백만원임(융자금 미회수채권 1,357억원 제외).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3,479,015	1,427,436	133,727	1,293,709	4,772,724

- 2023년 통합계정의 수입·지출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4,394억 1천 7백만원 증가한 1조 7,589억 3천 8백만원임.

< 2023년 당초 기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계	1,758,938	1,319,521	439,417	계	1,758,938	1,319,521	439,41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858	3,353	13,505	융 자 성 사 업 비	-	85,700	△85,700
예탁금원금 회 수	13,920	161,000	△147,080	기 본 경 비	7	7	-
예치금회수	317,582	76,807	240,775	예 탁 금	1,268,100	831,000	437,100
예 수 금	1,374,150	1,046,448	327,702	예 치 금	357,111	317,582	39,529
이 자 수 입	36,428	31,913	4,515	예 수 금 원리금상환	133,720	85,232	48,488

- 수입은 ▶ 융자금 회수(168억 5천 8백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139억 2천만원), ▶ 예치금 회수(3,175억 8천 2백만원), ▶ 예수금(1조 3,741억 5천만원), ▶ 이자수입(364억 2천 8백만원임)에서 발생함.
 - 융자금 회수는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원금(87억원)과 이자(81억 5천 8백만원)임.
 - 예탁금원금 회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100억원)과 투자계정(39억 2천만원)임.
 -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이월금임.

- 예수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4개 계정)와 2개 기금의 예탁금임.

<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 >

◦ 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40백만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50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56,10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97,70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5,60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441,60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65,500백만원
◦ 기금	
- 사회투자기금	2,000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0,000백만원

- 이자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16억 4천 6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347억 8천 2백만원)임.
- 지출은 ▶ 기본경비(7백만원), ▶ 예탁금(1조 2,681억원), 예치금(3,571억 1천 1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1,337억 2천만원)임.
- 예탁금은 ▶ 일반회계(4,397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2,04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6,242억원)에 대한 융자 지원임.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5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에 상환할 원금과 8개 특별회계(5개 계정)와 7개 기금에 상환할 이자임.

< 예수금 원리금 상환 세부내역 >

◦ 특별회계 원금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0,500백만원
-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43,000백만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48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3,100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400백만원
◦ 기금 원금	
- 사회투자기금	2,000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60,000백만원
◦ 특별회계 이자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457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6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45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3,713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4,565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1,249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6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4백만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백만원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31백만원
◦ 기금 이자	
- 성평등기금	945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1,736백만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9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182백만원
-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248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70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714백만원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19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9,256백만원

- 예치금은 기본경비,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임.

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2023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758,938	1,400,734	△358,204	계	1,758,938	1,400,734	△358,20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858	6,067	△10,791	융 자 성 사 업 비	-	150,000	150,000
예탁금원금 회 수	13,920	13,920	-	기 본 경 비	7	7	-
예치금회수	317,582	211,043	△106,539	예 탁 금	1,268,100	943,340	△324,760
예 수 금	1,374,150	1,128,694	△245,456	예 치 금	357,111	181,720	△175,391
이 자 수 입	36,428	41,010	4,582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133,720	125,667	△8,053

- 수입은 융자금 회수(△107억 9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1,065억 3천 9백만원), 예수금(△2,454억 5천 6백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이자수입(45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함.
 - 융자금 회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상환기한 도래 융자금(△87억원)의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변동⁴⁾을 반영(△60억 6천 7백만원)함.
 - 예치금 회수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면서 감소함.

4) 4.90%(2022.12.) → 4.07%(2022.5.)

- 예수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부거래 조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4개 계정)의 예수금 수입을 조정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97,700→179,044	△18,65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5,600→50,000	44,40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441,600→420,000	△21,600백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265,500→214,100	△51,400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 256,100→50,700	△205,400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6,400→33,700	7,300백만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1,250→1,150	△100백만원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증가함.
- 지출은 융자성사업비(1,500억원)를 순증하고, 예탁금(△3,247억 6천만원), 예치금(△1,753억 9천 1백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80억 5천 3백만원)이 각각 감소함.
- 융자성사업비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교통요금 인상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융자임.
- 예탁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19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3,286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33억 4천만원을 증액함.
-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시금고의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하면서 예수금 이자 상환 규모가 감소함.

- 예치금은 수입·지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면서 감소함.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⁵⁾.
- 이번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조정과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용자기간 연장,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시금고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비의 20.3%를 변경하면서 제출됨.
- 서울에너지공사 용자금의 용자기간 연장(수입계획 변경)과 서울교통공사 용자금 지원(지출계획 변경)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지원함으로써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중단없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용자기간 연장과 용자지원이 두 공사의 만성적인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자본금의 확충 없이는 자력으로 용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5년간 서울에너지공사 부채 및 경영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채	1,216	1,534	1,821	1,339	1,703	3,073
채무	761	950	1,217	805	895	1,820
부채비율	43.7%	56.1%	60.7%	36.8%	51.4%	135.2%
당기순손실	△23	△47	△112	△21	△462	△1,254

-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이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면서 최근 5년 평균 7,69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수송원가(2,003원⁶⁾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재무구조의 악화가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부채 및 경영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채	46,046	58,053	53,307	62,535	66,072	65,570
채무	27,263	31,289	26,726	34,882	35,973	35,380
부채비율	54.0%	78.1%	67.7%	88.2%	77.9%	74.0%
당기순손실	△5,254	△5,389	△5,865	△11,137	△9,644	△6,420

6) 9호선과 경전철 노선을 제외한 서울교통공사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2,003원, 기본운임은 1,250원이며, 평균 운임손실은 1,005원임(2022.1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용).

- 이에 2020년 이후 3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2023년 예상 부족자금이 1조 7천억원, 부채는 4조원에 달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두 공기업에게 자본 출자 방식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 시설투자비와 운영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 범 준	02-2180-8056